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55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7.

발 의 자 : 김예지·배준영·정성국
김미애·송석준·백종현
신성범·김상훈·김소희
안상훈·우재준·박덕흠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과용 도서가 교육과정과 수업 진도에 맞추어 적기에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이며, 시각장애를 비롯한 장애학생의 경우에 이는 점자·확대 교재 등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형태를 말함. 그러나 점자·확대 교재 등의 제작이 지연되어 학생들에게 당장의 수업 진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점역한 분권 형태로 보급되는 등 제때 이용할 수 없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

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,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파일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KS 표준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에게 의무가 없어 실제로는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. 특히 비장애인용 교재에 포함된 도표나 삽화 등을 시각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로 변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출

판사에서 변환하지 않은 채 제공함에 따라 교재 제작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고 정확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가 시각장애인용 학습 교재 파일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국가 수준의 표준 지침을 명확히 마련하고,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.

이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교과용 대체자료가 교과용 도서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,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료 하여금 교과용 대체자료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며,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등 교육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애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등).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”을 “제1호에 따른 교과서, 제2호에 따른 지도서와 제3호에 따른 교과용 대체자료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선정 및 가격 사정(査定)”을 “선정, 가격 사정(査定), 교과용 도서의 공급 시기 및 점검”으로 한다.

3. 교과용 대체자료: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4호에 부합하도록 「저작권법」에 따른 “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”로 변환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
-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당 도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교육부장관은 매년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 및 배포 현황을 점

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
제2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교육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제59조 중 “교육과정”을 “교육과정, 교과용 대체자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
마련하여야 한다.

-----.